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43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제2204443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확대(안 제29조의2제1항)	2

I.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제2204443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송재봉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9. 30.

다. 회 부 일 : 2024. 10.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본사가 있는 비수도권 지역 고교·대학 졸업자(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비율은 2018년 18%에서 시작해 2022년 30%로 상향 조정되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최근 지역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며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동일 입법 취지로 볼 수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과 같이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비율을 법률로 명시하고, 해당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함으로써, 지역인재 취업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활성화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3. 검토의견

가.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확대(안 제29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u>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u>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u>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 ----- ----- ----- ----- ----- ----- ----- ----- ----- ----- -----사람(<u>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제외한다</u>)을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40 이상을-----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지역인재 채용의무 비율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규정¹⁾되어 있는 비율을 100분의 40으로 상향함과 아울러 이를 법률에 명시하되,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을 제외하려는 것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²⁾(이하 “지방대육성법”이라 한다)에서는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채용의무 비율을 시행령에 위임³⁾하고 있으며,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제30조의2제2항 관련)

- | | |
|----------------------|-----------------------------------|
| 1.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 2. 이전공공기관을 제외한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
|----------------------|-----------------------------------|

해당연도	비율(%)	도입연차	비율(%)
가. 2018년도	18.0	가. 1년차	18.0
나. 2019년도	21.0	나. 2년차	21.0
다. 2020년도	24.0	다. 3년차	24.0
라. 2021년도	27.0	라. 4년차	27.0
마. 2022년도 이후	30.0	마. 5년차 이후	30.0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그 비율을 30%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과 같이 채용의무 비율을 100분의 40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지역인재 취업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 보임.

한편, 지방대육성법이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된 범위에 있어 보다 포괄적인 측면이 있어, 지방대육성법 상 지역인재 채용의무 비율이 100분의 35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혁신도시법과 지방대육성법 상 지역인재 채용제도 차이】

구분	혁신도시법	지방대육성법
채용비율	<u>100분의 30</u>	<u>100분의 35</u>
채용대상	<u>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u>	<u>지방대학</u> 의 학생 또는 졸업한 사람
채용기관	<u>이전공공기관등</u>	<u>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u>
기타사항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u>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u>

아울러, 지방대학과 수도권 소재 대학과의 입장, 지역인재 범위 확대를 통한 지역발전 가능성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법률에서 의무채용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유사제도사례⁴⁾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 역차별 논란 등 갈등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추가적으로, 지역인재 채용비율 확대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지역인재 대상 및 채용비율 확대 관련 관계기관 의견 】

구분	주요 의견
법무부 (반대)	○ 채용비율 변경 필요 시 시행령 개정이 가능함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반대)	○ 법률에 의무채용비율 50%를 명시하게 되는 경우, 이전공공기관별 기관 특수성을 전혀 반영할 수 없게 됨
한국전력기술 (반대)	○ 법률에 의무채용비율 50%를 명시하게 되는 경우, 이전공공기관별 기관 특수성을 전혀 반영할 수 없게 됨
기술보증기금 (반대)	○ 부산 지점은 8.97%에 불과, 이전지역(부산)인재를 50% 이상 계속 채용 시 전국 단위 인사배치와 인력운영이 어렵고, 여타 공공기관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이전지역(부산)인재 채용비율은 100분의 35가 합리적
한국수력원자력 (반대)	○ 이전지역인재 목표 운용 중 특정대학 출신 쏠림현상 문제 등이 발생한 바 상향하더라도 35%가 적정하며, 부작용이 심화될 것인 바,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목표도 고려

문 의 처

02)6788-5581

4) (공무원임용령) 서울 제외 지역인재 채용비율 20%(7급 30%), 양성평등 채용비율 30%